

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유사 기능을 가진 통합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, 유사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지방채상환기금 및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운용의 규정을 준수하고, 지방채 발행 지양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관리로 지방채 잔액 감소를 통한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폐지 절차가 즉시 진행 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우며,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기금의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람.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